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조(신고서의 정정·취하) ① 신고인이 신고서를 정정 또는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정 또는 취하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기재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오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1. ~ 4. (생략)</p> <p>5. <u>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로서 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기간내에 발생한 오류</u></p>	<p>제4조(신고서의 정정·취하) ①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자를 기재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u></p>	<p>○ 법적 근거 없는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p> <p>○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또는 질의 이전 신고분도 결과에 따라 면제하도록 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6. ~ 9. (생략)</p> <p>10.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항목 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정정한 경우에 한함.</p> <p>11. ~ 13. (생략)</p> <p>③ 세관장은 사유서 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귀책사유자 별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6. ~ 9. (현행과 같음)</p> <p>10. ----- ----- ----- <단서 삭제></p> <p>11. ~ 13. (현행과 같음)</p> <p>③ ----- <u>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증빙자료</u> ----- -----.</p> <p>④ (현행과 같음)</p>	<p>○ 오류점수 면제 대상 확대</p> <p>○ 법적 근거 없는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p>
<p>제6조(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 ① <u>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류점수를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는 신고인 등은 이를 확인하거나 통보를 받은 달의 20일까지 또는 오류점수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가 종료된 후 2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에게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 제출(별지 제3</u></p>	<p>제6조(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 ① <u>제5조에 따라 열람하거나 ----- -----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 ----- 별지 제3호서식으로 오</u></p>	<p>○ 문구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u>출 기간에 보류기간 연장신청(별지 제4호 서식)을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보류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그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u></p> <p>② (생략)</p> <p>③ 보류기간 연장신청 및 오류점수 확정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의 타당성을 <u>검토하여</u>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등록한 후, <u>오류점수 확정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p>	<p><u>여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검토하고</u> ----- -----, <u>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점수 확정 통보서를</u> ----- -----.</p>	<p>○ 문구 정비</p>
<p>제8조(오류점수의 계산)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오류점수 이외에 수출입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p> <p>1. 신고수리 후에 <u>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수출 18점, 수입 22점으로 한다.</u></p> <p><u><신설></u></p>	<p>제8조(오류점수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란 또는 행을</u> ----- ----- <u>오류점수는 다음과 같다.</u></p> <p><u>가.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18점, 수입신고 22점</u></p>	<p>○ 규정 보완 → 행 추가·삭제의 경우 부과하는 오류점수 명시</p>

현행	개정안	비고
<p>2. ~ 5. (생략)</p> <p>6.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예상오류를 통보한 신고내역이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세관직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u>별표3</u>에 규정된 점수의 4배로 한다.</p> <p>③ <u>수출입신고 품목사항의 정정에 따라</u> <u>각란별로</u>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u>다음의</u>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1. 수입신고의 경우 <u>란별 88점</u></p> <p>2. 수출신고의 경우 <u>란별 72점</u></p> <p>④ 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u>제4조 제1항 제3호</u>부터 <u>제5호</u>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p>	<p><u>나.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수입신고 각 10점</u></p> <p>2. ~ 5. (현행과 같음)</p> <p>6. ----- ----- ----- <u>별표 3</u> ----- -----.</p> <p>③ <u>수출입신고</u> ----- <u>신고건별 또는</u> <u>란별로</u> ----- <u>다음</u> ----- -----.</p> <p>1. ----- <u>신고건별 500점, 란별 88점</u></p> <p>2. ----- <u>신고건별 500점, 란별 72점</u></p> <p>④ ----- ----- <u>제4조 제1항 제3호</u> ----- -----.</p>	<p>○ 띄어쓰기 수정</p> <p>○ 신고건별 오류점수 부과 상한선 설정</p> <p>* 규제혁신전략회의 건의 과제 채택</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u>내 신청정정 시</u> : 항목당(제8조제2항제3호는 건당) 오류점수는 0.2점으로 계산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정정시기에 따른 면제 및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오류에 대한 제재 등) ① <u>관할지세관장은</u> 오류를 발생시킨 신고인 등에 대해서 제4조 및 <u>제8조의 규정에 의거</u> 전 분기 전국 세관에서 발생한 오류점수를 수출 또는 수입 업무별로 구분하여 누적한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별로 <u>별표1의 제재기준에 따라</u> P/L제재를 한다. 다만, 관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L 제재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내</u> ----- <u>시</u>: ----- -----.</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오류에 대한 제재 등) ① ----- ----- ----- <u>제8조에 따라</u> ----- ----- <u>별표 1</u>----- -----.</p> <p>② (현행과 같음)</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 업무별로 오류점수가 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이상인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P/L 제재와 병행하여 <u>별표2</u>의 조정내역에 따라 해당 업무의 검사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한다.</p> <p>④ (생략)</p> <p>⑤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의 말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u>제5조</u>부터 <u>제7조</u>까지에 따라 확정된 제재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p> <p>⑥ <u>제대대상자</u>에 대한 제1항의 조치는 <u>제6조</u>부터 <u>제7조</u>까지에 의하여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p> <p>⑦ (생략)</p>	<p>③ ----- ----- ----- <u>별표 2</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제5조</u> <u>부터</u> ----- -----.</p> <p>⑥ <u>제대대상자</u>----- <u>제6</u> <u>조와 제7조에 따라</u> ----- -----.</p> <p>⑦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p> <p>○ 띄어쓰기 수정</p> <p>○ 오타수정</p>
<p>제10조(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선정대상은 분기별 수출입신고 건수가 1,000건 이상인 관세사로서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 「<u>관세사법</u>」 제27</p>	<p>제10조(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관세사법</u>」 제2</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은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u>교육받은</u> 달의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4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 ① 관할지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등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특례적용 범위 내에서 그 제재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p> <p>1. <u>A등급</u> : 제재의 30%</p> <p>2. <u>AA등급</u> : 제재의 70%</p> <p>3. <u>AAA등급</u> : 제재의 70%</p> <p>② <u>제9조 제1항</u>에 따라 P/L제재를 하는 경우 <u>별표1</u>의 ‘P/L 제재기준’의 일수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수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p> <p>③ <u>제10조 제3항</u>에 따라 검사비율을 상향</p>	<p><u>세사회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u> ----- ----- <u>교육한</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 ① ----- ----- ----- ----- -----.</p> <p>1. <u>A등급</u>: -----</p> <p>2. <u>AA등급</u>: 제재-----</p> <p>3. <u>AAA등급</u>: -----</p> <p>② <u>제9조제1항</u>----- -- <u>별표 1</u>----- -----.</p> <p>③ <u>제10조제3항</u>-----</p>	<p>하는 규정 마련</p> <p>* 한국관세사회 위탁업무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관련</p> <p>○ 띄어쓰기 및 오타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조정하는 경우 <u>별표2</u>의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의 검사비율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p> <p>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0년7월1일</u>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6월30일</u>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 <u>별표 2</u> ----- ----- -----.</p> <p>제15조(재검토기한) ----- ----- ----- <u>2023년 1월 1일</u> ----- ----- <u>12월 31일</u> ----- -----.</p> <p>부 칙 <고시 제2023-00호(202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재검토기한 재설정</p> <p>○ 부칙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별표4] 신고서 정정사유별 오류점수 면제 기준(제8조의2 제1항)</p> <p><input type="checkbox"/> 수입신고 정정 사유</p> <table border="1" data-bbox="174 443 913 957"> <thead> <tr> <th>부호 코드</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06</td> <td>확정가격신고(세관장 확정포함)</td> <td>오류점수 면제</td> </tr> <tr> <td>14</td> <td>적하목록(반입내역)정정</td> <td></td> </tr> <tr> <td>16</td> <td>세관직원 업무처리 오류</td> <td>오류점수 면제</td> </tr> <tr> <td>17</td> <td>화주 귀책사유</td> <td></td> </tr> <tr> <td>19</td> <td>개인수입화물</td> <td></td> </tr> <tr> <td>28</td> <td>자진심사결과(부호24 제외)</td> <td></td> </tr> <tr> <td>33</td> <td>ACVA 승인에 따른 정정</td> <td>오류점수 면제</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수출신고 정정 사유</p>	부호 코드	내용	비고	06	확정가격신고(세관장 확정포함)	오류점수 면제	14	적하목록(반입내역)정정		16	세관직원 업무처리 오류	오류점수 면제	17	화주 귀책사유		19	개인수입화물		28	자진심사결과(부호24 제외)		33	ACVA 승인에 따른 정정	오류점수 면제	<신 설>			<신 설>			<p>[별표 4] 신고서 정정사유별 오류점수 면제 기준(제8조의2제1항)</p> <p><input type="checkbox"/> 수입신고 정정 사유</p> <table border="1" data-bbox="958 443 1675 957"> <thead> <tr> <th>부호 코드</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삭 제></td> <td></td> <td></td> </tr> <tr> <td>14</td> <td>적재 화물목록(반입내역) 정정</td> <td></td> </tr> <tr> <td><삭 제></td> <td></td> <td></td> </tr> <tr> <td><삭 제></td> <td></td> <td></td> </tr> <tr> <td><삭 제></td> <td></td> <td></td> </tr> <tr> <td>28</td> <td>자진심사결과</td> <td></td> </tr> <tr> <td>33</td> <td>ACVA 결정, 연례보고에 따른 정정</td> <td>오류점수 면제</td> </tr> <tr> <td>41</td> <td>원산지 자율점검 결과</td> <td>오류점수 면제</td> </tr> <tr> <td>98</td> <td>기타(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td> <td>오류점수 면제</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수출신고 정정 사유</p>	부호 코드	내용	비고	<삭 제>			14	적재 화물목록(반입내역) 정정		<삭 제>			<삭 제>			<삭 제>			28	자진심사결과		33	ACVA 결정, 연례보고에 따른 정정	오류점수 면제	41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	오류점수 면제	98	기타(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오류점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호 6, 16, 17) 정정 사유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부호 신설(98)하여 대체 ○ (부호 14) 관세법 용어 적용 ○ (부호 19) 불필요한 사유 삭제 ○ (부호 28) 부호 24 삭제사항 반영 ○ (부호 33, 41*) 자율정정 활성화를 위한 면제 사유 추가 * 내부규제개혁 채택과제 ○ (부호11, 12, 13, 27, 28) 정정 사유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부호
부호 코드	내용	비고																																																												
06	확정가격신고(세관장 확정포함)	오류점수 면제																																																												
14	적하목록(반입내역)정정																																																													
16	세관직원 업무처리 오류	오류점수 면제																																																												
17	화주 귀책사유																																																													
19	개인수입화물																																																													
28	자진심사결과(부호24 제외)																																																													
33	ACVA 승인에 따른 정정	오류점수 면제																																																												
<신 설>																																																														
<신 설>																																																														
부호 코드	내용	비고																																																												
<삭 제>																																																														
14	적재 화물목록(반입내역) 정정																																																													
<삭 제>																																																														
<삭 제>																																																														
<삭 제>																																																														
28	자진심사결과																																																													
33	ACVA 결정, 연례보고에 따른 정정	오류점수 면제																																																												
41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	오류점수 면제																																																												
98	기타(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오류점수 면제																																																												

현행			개정안			비고
부호코드	내용	비고	부호코드	내용	비고	신설(89)하여 대체
11	화주업무 오류		<삭제>			
12	관세사기재 오류		<삭제>			
13	관세사계산 오류		<삭제>			
27	확정수량신고	오류점수 면제	<삭제>			
28	확정가격신고	오류점수 면제	<삭제>			
<신설>			89	기타(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오류점수 면제	